

항공체계시험인증연구센터 규정



한국항공대학교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1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항공체계시험인증연구센터 규정

Aviation System Test and Certification Research Center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및 소재지) 이 연구센터는 한국항공대학교 부설 항공체계시험인증연구센터 (Aviation System Test and Certification Research Center)라 칭하고, 한국항공대학교 내에 둔다.

제2조 (목적) 본 연구센터는 항공시스템의 비행시험, 검증시험, 평가, 인증, 체계공학, 항공융복합체계 연구를 통하여 항공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아울러 대학발전과 국가항공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연구센터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각종 항공시스템의 비행시험, 검증시험 및 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
2. 각종 항공시스템의 S/W, H/W, 시설, 인력 등에 대한 인증기술, 제도, 절차, 프로세스, 교육 커리큘럼 등에 관한 연구
3. 항공시스템, 복합시스템 (System of Systems)의 체계공학 프로세스 연구, 교육, 기업의 체계공학 관리 구축 및 개발 지원
4. 항공기술과 타학문 분야와의 융합기술 연구
5. 상기 1~3항에 관련된 항공탑재시스템 및 항행시스템 인증 검사 등 국내 및 국제 용역사업, 위탁사업, 협동사업 등 수행
6. 상기 1~3항과 관련된 국내외 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발굴과 추진
7. 동 분야의 연구 자료집, 전문도서, 학술지 등 발간
8. 기타 본 연구센터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수행

제 2 장 조 직

제4조 (조직) 본 연구센터에는 시험·평가연구부, 인증·표준연구부, 체계공학연구부, 연구지원실 등을 둔다.

제5조 (임원 및 임무) 본 연구센터에는 센터장 1인 및 감사 1인을 둘 수 있다.

1. 센터장은 본 대학교에 재직하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이와 동등한 경력을 보유한 연구교수 중에서 센터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감사는 센터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2. 센터장은 연구센터를 대표하고 센터 업무를 총괄한다.

3. 감사는 회계 연도 말에 본 연구센터의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센터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6조 (연구업무) 본 연구센터에 소정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별로 연구부를 둔다. 또한 업무상 필요에 따라 부센터장을 둘 수 있다. 각 연구부에는 부서장 1명을 두되 책임연구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 연구부의 설치와 폐지 및 외부로부터 의뢰받은 연구과제에 대한 주요 업무 결정은 운영위원회의 권고내용을 기초로 센터장이 결정한다.

1. 연구센터는 전문분야별로 연구부를 통합 또는 신설할 수 있다.
2. 부센터장, 연구부장 및 연구실장은 센터장이 임명한다.
3. 부센터장, 연구부장 및 연구실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운영위원회 : 연구센터의 인사, 사업, 예산 계획 등 센터 운영상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며, 센터장, 부센터장, 연구부장 및 연구실장(간사) 으로 구성한다.
5. 감 사 : 연구센터 회계활동을 감사한다.
6. 부 장 : 각 연구부의 활동을 주관한다.
7. 시험·평가연구부 : 항공시스템 비행 시험 및 측정, 평가, 분석 관련 연구를 수행한다.
8. 인증·표준연구부 : 인증기술, 제도, 절차 및 표준화 관련 연구 및 업무를 수행한다.
9. 체계공학연구부 : 체계공학 프로세스, 인증체계 관련 연구 및 업무를 수행한다.
10. 연구지원실 : 연구센터의 연구업무 지원, 대외 협력 및 홍보를 담당한다. 연구지원실장은 운영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

제7조 (연구원) 본 연구센터에는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특별연구원 을 두고 필요시 센터장이 위촉한다.

1. 책임연구원은 본 대학교의 조교수급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의 연구교수 급으로 한다.
2. 선임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동등 경력자로 한다.
3. 연구원은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동등 경력자로 한다.
4. 연구보조원은 석사과정 학생 또는 동등 경력자로 한다.
5. 특별연구원은 본 연구센터의 목적에 찬동하는 교외인사로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센터장이 위촉한다.

제8조 (자문위원) 본 연구센터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9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센터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10조 (위원회구성)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센터장, 부센터장, 연구부장 및 실장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연구지원실장이 담당한다.

제11조 (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
2. 연구과제의 선정

- 3. 연구계획, 과정 및 연구결과의 검토, 평가
- 4. 본 연구센터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5. 기타 본 연구센터 운영상의 중요 사항

제12조 (회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재 정

제13조 (재정) 본 연구센터의 재정은 자체수입금, 대학에서 책정한 연구센터 예산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4조 (회계연도) 본 연구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 (연구비 관리) 연구비의 운영 및 관리 규정은 대학의 규정에 준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 (규정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사항은 본 대학교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장 기 타

제17조 (시행세칙)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시행세칙을 둘 수 있다.

부 칙

-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 201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